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5. 7. 7.(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제2011-67차('11.11.30.), 제2012-48차('12.8.31) 및 제2015-8차('15.2.12)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전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 (주)제이티비씨 <이영돈 PD가 간다> (2015-34(서)-152)

- (주)제이티비씨 <이영돈 PD가 간다> 방송('15.3.15)에 대한 '경고' 제재조치와 관련, (주)제이티비의 재심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기각하고 원심 처분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스카이라이프티브이 등 11개사 (2015-34-153~163)

- 2014년 9월(EBS), 2015년 2월, 2015년 3월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총13,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15-34(서)-164)

-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간신문이 방송 사업을 겸영,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신문부수 인증기관으로 (사)한국ABC협회를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7월 19일까지로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 다만, 지정기간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 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 조작 등 문제점 발견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